

# Korean Tax Update

July 2018, Issue 49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보기]

####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1)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61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현행)에서 10년(개정)으로 연장

#####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9)

-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 27 조의 2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 (공제액)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3) 종합부동산세 개편 (중부법 §9·§14, 중부령 §2의 4)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 (현행)80% → ('19)85% → ('20)90%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 과표 6~12억원 : (현행)0.75% → (개정)0.85% (3주택이상 : 1.15%)
  - 과표 12~50억원 : (현행)1% → (개정)1.2% (3주택이상 : 1.5%)
  - 과표 50~94억원 : (현행)1.5% → (개정)1.8% (3주택이상 : 2.1%)
  - 과표 94억원 초과 : (현행)2% → (개정)2.5% (3주택이상 : 2.8%)
-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 과표 15억원 이하 : (현행)0.75% → (개정)1%
  - 과표 15~45억원 : (현행)1.5% → (개정)2%
  - 과표 45억원 초과 : (현행)2% → (개정)3%

#####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국조령 §50④)
  -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거주자를 포함하고, 외국법인 지분에 대한 직·간접 100% 소유 요건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유자 범위를 확대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 (국조법 §34의 2③)

- 현행 형사처벌시 과태료 부과액 전액을 취소하던 것을 벌금이 과태료 부과액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액을 취소

**(5)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 의 2, §165 의 4, 소득령 별표 5, 법인법 §121 의 2, §121 의 4, 법인령 별표 2)
  - 해외부동산 신고대상에 처분을 포함하고, 신고대상 건별 가액기준(취득·투자운용의 경우 취득가액 2 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 2 억원 이상)을 신설하며, 해외부동산 처분명세서를 제출자료에 추가
  -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를 인상(취득 및 운용소득 미신고에 대해 현행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상향, 처분 미신고에 대해 처분가액의 10%, 과태료 한도를 현행 5 천만원에서 1 억원으로 상향)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소득법 §165 의 2, §165 의 4, 소득령 별표 5, 법인법 §121 의 2, §121 의 4, 법인령 별표 2)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및 과태료 금액 인상(개인은 건별 3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법인은 건별 5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상향)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 신설(소득법 §165 의 3, §165 의 4, 법인법 §121 의 3, §121 의 4)
  - (대상)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출처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 일 이내(60 일 내에서 1 차례 연장 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6)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 의 2)
  - 역외거래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국제거래 외에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포함시키고,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의 경우 현행 7 년에서 10 년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현행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
- 정보교환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신설(국기법 §26 의 2)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정보를 받은 날부터 1 년의 특례 신설. 다만, 정보교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3 년 이내로 한정

**(7) 국외전출세 강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소득법 §118 의 9, §118 의 11)

-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하고, 세율을 과세표준 3 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0%로 유지하되, 과세표준 3 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인상
-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 신설(소득법 §118 의 15)
  - 신고 기준일을 현행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신고일 전날로 조정하고 주식의 액면가액 × 2%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신설
- (8)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추가 (부가법 §53 의 2①, 부가령 §96 의 2①)
- (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조특법 §6, §7)
- (10)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비과세대상 축소 (인지칙 §8 의 2)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 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
- (1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소득령 §159 의 2)
  -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과세대상을 확대(코스닥 150 선물, 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선물 등)
  -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추가
- (12) 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의 지방이전 감면 배제 명확화 (조특법 §63 의 2)
  - 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등을 통해 승계한 사업은 법인세 감면배제
- (13)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12)
  -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1.12.31.까지 연장하되, 기술취득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종료
- (14) 제 3 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 의 14)

##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 (1)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조특법 §104 의 24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었던 공제대상에 대기업도 포함
- (2)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조특법 §28 의 3 신설)
  - '18.7.1.~'19.12.31 내에 취득한 R&D 설비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
  - 공제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의 신기술 추가
  - 적용기한을 '21.12.31 까지 연장
- (4)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25 의 5)

- 투자세액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현행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
- 신설기업의 경우 첫째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요건 추가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18)**

- (현행) 2년간 50% 감면 → (개정) 5년간 50% 감면

**(6)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법인령 §19 제 20 호)**

-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손금산입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조특법 §12 의 3, §12 의 4)**

- 5년내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지분율 요건을 유지한 경우에는 현행 공제세액 전액 추징에서 공제세액에 감소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사후관리 완화

**3. 조세체계 합리화**

**(1)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개소법 §1②4)**

-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 당 36 원(현행)에서 46 원(개정)으로 인상
- LNG 제세부담금(수입부과금 포함)을 kg 당 91.4 원(현행)에서 23 원(개정)으로 인하

**(2)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 (관세법 §176 의 2·3, 관세령 §192 의 3·6)
  - 중소기업 : (현행)1회 → (개정)2회
  - 대기업 : (현행)갱신불가 → (개정)1회
-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관세칙 §68 의 2)
  -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0.01%로 인하

**(3) 국세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 의 2, §121 의 5)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법인법 §94④·⑤, 소득법 §120④·⑤, 법인령 §133③, 소득령 §180)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활동장소(자산의 단순한 구입,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보관, 타인에 의한 자기 자산의 가공 등)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 특정활동장소의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예외 요건 신설
    - ① 특정활동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특정활동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인 경우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활동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 (법인법 §94③, 소득법 §120③)
  - 종속대리인의 범위에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
  -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를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으로 명확화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차등화 (법인법 §18 의 2)**

- 지분을 30~40% 상장 자회사와 지분을 50%~80% 비상장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조특법 §24, §25, §25 의 2, §25 의 3, §94, §130)**

- 안전설비 등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대기업), 3%(중견기업), 10%(중소기업)로 조정하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중견·중소 구분 없이 현행 10%를 유지하고, R&D 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또한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로 조정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삭제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삭제하되 신성장산업 설비(OLED 제조설비, AI 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등)를 추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내진보강설비를 추가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증법 §18⑥, 상증령 §15)**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 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추징액 산정
  - 추징액 = (공제금액 × 자산처분비율 × 기간별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7)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현행)에서 60%(개정)로 축소 (법인법 §76 의 13①)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80%(현행)에서 60%(개정)로 축소 (법인법 §91)

**(8)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법 §129②2)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현행)40% → (개정)42%

-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 (현행)90% 유지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 부담 완화 (소득법 §155 의 7 신설)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

**(9) 국외투자기구(국외에서 설립된 공·사모형 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현행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중에서 권리·의무 주체 기준(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을 삭제 (법인령 §1)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하되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하도록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별 과세시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다음의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소득법 §121, 법인법 §93 의 2 신설)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다만, 이 경우에는 비록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을 부인하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국기법 §26 의 2)
  -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되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10)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1 일 0.03%에서 0.025%로 인하 (국기령 §27 의 4, 관세령 §39)
- 체납 가산금율을 현행 매 1 개월마다 월 1.2%에서 0.75%로 인하 (국징법 §21, 관세법 §41)
-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1 일 0.025%)와 체납가산금(월 0.75%)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고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국기법 §47 의 4, 국징법 §21)
  - 통합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 일 0.025%
  - 체납에 대한 제재 : 납부고지 후 체납세액 × 3%
- 체납 가산금율을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 (국징법 §21, 관세법 §41)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부가법 §60②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를 현행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축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연전송의 경우 현행 0.5%에서 0.3%로, 미전송의 경우 현행 1%에서 0.5%로 인하하고 지연전송 적용기간을 현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 일까지에서 25 일(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
-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조특법 §100 의 25)
  - (현행)  $\text{Max}(\text{①미납세액} \times 1 \text{ 일 } 0.03\%, \text{②미납세액} \times 5\%) \leq \text{미납세액의 } 10\% \text{ 한도}$
  - (개정)  $\text{미납세액} \times (3\% + 1 \text{ 일 } 0.025\%) \leq \text{미납세액의 } 10\% \text{ 한도}$

**(1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전환(상증법 §4 의 2)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삭제하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
  -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 대상에 추가하고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3 천만원)는 적용 배제 (상증법 §47, §55)

**(12)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 (국기법 §69)**

-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 미제출시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하고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시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

**(13)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국기법 §22)
  -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에서 ①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②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
-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은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국기법 §45 의 3)
-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81 의 15)
  - ①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②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③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④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 백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를 과세예고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을 신설하여 경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국기법 §22 의 3 신설)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신설 (국기법 §25)

**(14)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을 제외 (국기법 §81 의 12)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 (국기법 §81 의 4⑤ 신설)
  -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녹음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납세자가 요청 시 녹음파일 등을 교부

**(15)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납세관리인 신고시 국외전출세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5 월로 연장(소득법 §118 의 15)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3 개월에서 2 년으로 연장(소득법 §118 의 15, 소득령 §178 의 10 국기령 §25 의 2)

**4. 기타**

**(1)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법인법 §76 의 14)**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처분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를 현행 (자산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에서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으로 조정

**(2)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소득법 §94)**

- 과점주주 간 양도(1 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3 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 차)하는 경우 1 차 양도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3)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상증법 §66, 상증령 §63①)**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 적용 대상에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추가하고,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상증령 §49①)**

-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국기법 §47 의 3④1 호다목)

**(5)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부가법 §10①)**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추가

**(6)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부가법 §29)**

- 토지·건물 등 일괄공급 시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 대상에 납세자가 실지거래 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추가

**(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부가법 §52④)**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에서 25 일로 연장

**(8)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국조법 §27)**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9)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국조법 §5)**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정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1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법 §81 의 11)**

- 소득·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를 부분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11)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폐지 (국조법 §28)**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한 조세조약 우선적용 폐지

**(12)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설 (교육세법 §9①)**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경우 4 개월 이내 신고·납부

**(13)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법 §10①,②)**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 (대상)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거짓제출 등
  - (처벌)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 10%)의 2배 이하]

[예규·판례]

**[판례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21 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 두 35025 판결

- 홍콩 법인의 비거주자인 대주주들이 원고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272 억 원과 증여세 약 26 억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홍콩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 99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 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 1 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증세법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바,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 21 조 제 1 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함.

**[판례 2] 구 국세기본법 제 52 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 다 238660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제 5 호는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을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판례 3]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및 그 판단 기준과 폐석회처리공사·호수재정비공사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 두 40986 판결

- 원고가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처리공사·호수재정비공사를 시행하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분할을 비적격분할인 동시에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폐석회처리공사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분할은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구 법인세법령에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폐석회처리공사는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용이 인천공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호수재정비공사는 인천공장 부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4]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 다 242409 판결

- 원고가 과세처분에 따라 2009~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2015.6.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밝혀졌고, 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이 드러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2009~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당시에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과세처분에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2015년 귀속분의 처분은 2015.11.16. 이루어졌는바, 2015.6.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됨.

**[판례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 두 45298 판결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자본금을 감자한 후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재조달이익을 정부와 공유하기 위하여 당초 보장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낮춘 사안에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貸主)들은 지급조건·상환시기 등에 있어 선순위차입금 대주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고,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보장율이 인하되면 원고의 예상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투자자들 일부는 후순위 대출투자를 결정하였다가, 이후 정부가 추가 투자조건을 요구하자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한 후순위 차입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금전의 고율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1]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 등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 서 2540, 2018. 4. 26.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소송결과로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채무가 피상속인 생전에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였다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바, 지연손해금(소장부분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함.

**[심판례 2] 중국에서 납부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16 서 1525, 2018. 6. 20.

- 청구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후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 주장하며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한. 중 조세조약」제 5 조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이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조약 제 22 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동 조약 제 22 조에서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수수료가 중국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는바, 이처럼 「한. 중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 57 조에 따른 외국 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3]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조심 2017 중 2856, 2018. 6. 21.

-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동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동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처분청이 상증법 제 41 조의 3 에 의한 상장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상증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 항에 의한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제 41 조의 3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1 부 0318, 2011.9.19., 조심 2017 중 4667, 2018.2.1.).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동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해당 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상증법 제 41 조의 3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기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심 2017 부 3932, 2018. 6. 25.

-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①을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쟁점영업권②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쟁점영업권①에 대한 세무조정을 취소하고 쟁점영업권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당초 쟁점영업권①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201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영업권①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이 추후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영업권②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경정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쟁점영업권①에 대한 세무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례 5]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 서 5333, 2018. 6. 29.

- 이 건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인 속성을 비교하여 볼 때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에 포섭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입법기술상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 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예규 1]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 6. 20.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72 조 제 2 항 제 3 의 2 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예규 2]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 2018. 6. 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 1 호가목 1)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 20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예규 3]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시 그 분할대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 6. 26..

-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 52 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예규 4] 구 「지방세법」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지방세운영과-1556, 2018. 7. 5.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2016 두 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또한, 대법원 역

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90 누 6101, 2000 다 34822, 91 다 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

© 2018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